

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3367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6712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336751 판결

전문

원 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1. A

2. B

변론종결 2021. 10. 7.

판결선고 2021. 11. 4.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770,531원과 그 중 18,527,881원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0. 9. 2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8,770,5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8,770,5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① 피고 A이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6. 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 A이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2020. 2. 11.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0. 8. 28. C은행에 18,527,881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 ③ 위 대위변제일 당시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고,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89,15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A에 대한 추가보증료가 53,500원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8,527,881원, 법적절차비용 189,150원, 추가보증료 53,500의 합계 18,770,531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8,527,88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8. 28.부터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20. 9. 21.까지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20. 3. 20.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버지인 피고 B과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84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17.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D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34,800,000원인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E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2020. 2. 11.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0. 8. 28.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피고 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할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설령 피고 B이 피고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 중 1인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D을 근저당권자로 한 2건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2020. 3. 2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8. 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57,000,0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D의 피담보채무액은 130,412,141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26,587,859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3)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18,770,531원이어서(피보전채권액은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나 원고가 원금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위에서 인정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원고의 채권액인 18,770,53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8,770,531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별지

목 록

1층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파트 동[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 4165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7층 호 월근콘크리트조 57.0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41656200분의 45337-끝~.

